#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9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진종오·김상욱·김태호

박준태 · 서명옥 · 박정하

정성국 · 김상훈 · 유상범

김재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늘어나는 육상레저스포츠 수요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며,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상 및 수중 레저스포츠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수상레저 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 의 개별법을 각각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 에도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 선용과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험·교육·시합("경기"를 포함한다)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란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에이용되는 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육상레저스 포츠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 여야 함(안 제16조).
- 사.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설치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그 검사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 차.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
- 카.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및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 타.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 거나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 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 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하.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 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 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8조).

법률 제 호

#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육상례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례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 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험・교육・시합("경기"를 포함한다)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란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장비·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육상레저스포츠업"이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 4. "육상레저스포츠업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상레저스포츠업

- 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육상레저스포츠단체"라 함은 육상레저스포츠에 관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6. "안전관리자"란 레저스포츠업의 운영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안전검사"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 성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정밀검사를 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유지관리"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육상레저스 포츠업자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상례저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 제5조(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5. 육상레저스포츠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육상레저스포츠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육상레저스포츠시 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내의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진흥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례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육상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 제도의 조사 · 연구 및 기획
- 2.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기술 · 시설 등의 조사 · 연구 · 개발
- 3.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 4. 그 밖에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 저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또는 육상레저스포츠업 자 단체, 육상레저스포츠진흥과 관련된 연구·교육·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는 「국민체육진흥 법」 제19조에 따른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육상레저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하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단체 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역 육상레저스포츠 대회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육상레저스포츠 대회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육상레저스포츠 대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육상레저스포츠 대회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 육상레저스포츠 자원을 개발

-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 육상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 대회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육상레저스포츠업

- 제10조(육상례저스포츠업의 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례저스포 츠업의 운영현황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세부 업 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육상레저스포츠업의 등록)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 변경등록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등록절차, 등록 증 교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육상레저스포츠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2. 제23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 제13조(육상레저스포츠업자 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1.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煥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 제14조(폐업의 통보 등)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폐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 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수 있다.
- 제15조(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을 지킬 것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이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 3.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안전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 4.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
- 5.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범위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 6. 이용약관 등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 7.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육상레저스포 츠시설 종사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 에 게시할 것
- 8. 그 밖에 시설운영 및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4장 안전관리

- 제16조(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 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안전검사 기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7조(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검사)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조치 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검사 및 재검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검사결과의 기록·보관)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제17조제3항 에 따른 안전검사 및 재검사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한다.

- 제19조(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확정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안전교육)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및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종사 자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 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 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
- 이 풍부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와 그 종사자는 육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1.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장비의 안전점검
  - 2. 영업구역의 기상 상태의 확인
  -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이용 전 안전교육
  - 5. 영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배치
  - 6. 비상 구조장비 및 관련 의약품의 배치
  - ② 육상레저스포츠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육상레저스포츠기구에 태우거 나 이들에게 육상레저스포츠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2. 육상레저스포츠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3.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이용

자가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5. 허가 받은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 8. 육상레저스포츠기구를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7. 제28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이 이용에 제공한 경우
  - 5.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3조제1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13조에 따라 육상레저스포츠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제23조제

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보칙

- 제25조(육상레저스포츠단체의 설립) ① 육상레저스포츠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 등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육상레저스포츠의 이용자가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보고·현장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육상레 저스포츠시설 설치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육상레 저스포츠시설·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보험 등 가입)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진흥 및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육상레저스포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수수료) ① 제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상례저스포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 칙

-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육상레저스포츠업의 영업을 한 자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육상레저스포 츠업의 영업을 한 자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그 육상 레저스포츠업의 영업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28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상레저스포츠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 상레저스포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